



제417회국회(임시회)
제 2 차 국 방 위 원 회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격오지 근무 군무원에 대한 주거지원 등〉
■ 송옥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740호)

2024. 8.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 명 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군무원 지원 규정 신설에 대한 총괄 검토	3
2. 격오지 근무 군무원에 대한 주거지원	5
3. 군무원 자녀에 대한 전·편입학 지원	11
4. 군무원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설치	13
5. 군무원 자녀에 대한 숙식시설 지원	15
6.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시 군무원 자녀 고려	17
7. 군인에 대한 고궁 등의 이용 지원	19
※ 참고자료: 군무원 주거지원 관련 설문조사 결과	21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송옥주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4. 6. 20.
3. 회부연월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 숙소 등 주거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무원에 대하여는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라 공실이 발생하거나 격오지에 근무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국방개혁에 따른 군무원 채용 급증으로 군 내에서 군무원의 역할과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격지·오지 등 근무지에는 군무원의 거주 시설이 부족하고 주택임대자금 지원도 되지 않아 군무원이 임용을 포기하거나 의원면직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군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격지·오지 등 특수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의 경우 주거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자녀의 보육 및 교육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군무원의 복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원활한 군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역에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하여는 이러한 혜택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현역에 복무 중인 군인에게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군인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격지·오지 또는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군무원에게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나. 군무원의 자녀도 보육 및 교육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1조의2).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현역에 복무 중인 군인에게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

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3).

IV. 검토의견

1. 군무원 지원 규정 신설에 대한 총괄 검토

□ 개정안은 군인복지기본법을 개정하여 격오지 근무 군무원에 대한 주거지원(안 제9조제2항), 군무원 자녀에 대한 전·편입학(안 제11조제1항), 어린이집 설치(안 제11조제2항), 숙식지원(안 제11조제3항), 교육시설 지원(안 제11조의2)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최근 국방부는 국방업무의 전문성·연속성의 제고를 위해 비전투 분야 군무원 정원을 증가시키고 있으며,¹⁾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서도 국방 관련 업무의 전문성·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군무원 등 민간인력의 활용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규정²⁾하고 있는 등 병역 자원의 감소에 따라 군무원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음.

이를 고려하여 제정안은 격오지 근무 군무원에 대한 주거지원과 함께 군무원 자녀에 대한 각종 교육지원 규정 등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봄.

1) 군무원 정원 : ('17년) 2.6만명 → ('21년) 4.0만명 → ('25년) 4.7만명

2)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13조(민간인력의 활용확대) ①국군의 부대와 기관은 국방 관련 업무의 전문성·연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무원 등을 포함한 민간인력의 활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 다만, 현행 「군인복지기본법」은 제명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군인이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³⁾ 함을 목적⁴⁾으로 한다는 점에서, 군인이 아닌 군무원의 주거지원 및 그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등을 해당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⁵⁾

3) 「군인복지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군의 사기를 높이며 나아가 군인으로 하여금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목적규정은 해당 법률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한 문장을 말한다. 이는 법률의 제정목적과 입법취지를 담고 있어 개별 조문의 구체적 의미를 명확히 하는 해석지침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법제이론과 실제 2016, p.262)

5) 현재 군무원 복지정책을 규정하는 법률은 부재함. 따라서 군무원 복지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군인복지기본법」의 전부 개정(법률명 변경 포함) 또는 군무원 복지 관련 법률 신규제정 등의 방안도 함께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2. 격오지 근무 군무원에 대한 주거지원(안 제9조제2항)

개정안은 격지·오지 또는 도서지역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군무원에게도 군인에게 지원되는 주거지원 정책과 동등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군 숙소 지원 등) ① (생략) <u><신 설></u>	제9조(군 숙소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u>② 국가는 격지·오지 또는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군무원(「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1항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u>
<u>② 국가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거지원을 제공받은 군인에게 입주보증금 등 주거지원에 따른 금전을 징수할 수 있다.</u>	<u>③ -----제1항 및 제2항-----</u> <u>-----군인</u> <u>및 군무원(이하 “군인등”이라 한다)</u> <u>-----</u> <u>-----</u> <u>-----</u> .

□ 현행법상 군 숙소 제공 등 군 주거지원 정책은 ‘군인’에게 한정되어 있으며,⁶⁾ ‘군무원’의 경우에는 현행 법률이 아닌 훈령 등에 근거하여 장기공실이 예상되거나 격오지에 근무하는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가용범위 내에서 주거시설을 지원하고 있음.⁷⁾

이와 관련하여 군무원은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과 동일하게 「국가공무원법」상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의 주거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군부대가 주로 주둔하는 읍·면 지역에는 공단의 주택공급이 적고, 전국단위 인사교류 대상이 되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공단의 임대주택에 한번 입주하게 되면 다음 전출지에서는 3순위 이하가 되어 주거지원을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6)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군 숙소 지원 등) ①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군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서관 및 병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은 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 한하여 제공한다.

1.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이하 이 조에서 “군 숙소”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가.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대부
나.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 용도로 대출한 자금에 대한 이자
다. 월차임

7)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15조(시설관리 등)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관사 또는 간부숙소가 장기공실이 예상되는 경우, 「군무원 인사법」에 따른 군무원, 국방대학교수, 국방정책추진을 위해 고용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어린이집 교사 등 민간 고용 인력에 한하여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 이때 입주 조건은 제10조 제1항을 준용하며 재직 중인 자에 대해서는 입주기간을 최소 1년으로 하되, 입주자가 신청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단, 퇴직 등 퇴거사유 발생 시 퇴거기한은 퇴거통보일로부터 2개월로 한다.

제36조(간부숙소의 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 ⑦ 각 군 등의 장은 격오지(GOP 지원부대, 서북도서 등) 근무 군무원에 대해 주거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가용한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표 1] 군무원·경찰·소방공무원의 공무원연금공단 주택사업 이용 현황

(단위: 세대)

구 분	운영세대	군무원 입주세대	경찰 입주세대 (해양경찰 포함)	소방공무원 입주세대
공무원 임대주택	15,696 (100%)	212 (1.4%)	2,701 (17.2%)	1,429 (9.1%)
임대 후 분양아파트	247 (100%)	5 (2.0%)	36 (14.6%)	17 (6.9%)

※ 자료: KIDA, 「군무원 주거지원 개선 방안 연구」, 2021.

이에 비해 경찰공무원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숙소가 지원되고 있으며,⁸⁾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도 강원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⁹⁾로서 관사 지원의 근거를 두고 있음.¹⁰⁾

□ 이에 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격지·오지 또는 도서지역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군무원에게 군인과 동등한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무원에게 안정적인 주거여건을 제공하고 군무원의 복무만족도를 높여 원활한 군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임.

8)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9조(직원숙소 지원) 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연고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직원숙소(경찰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신축, 매입 또는 임차한 주거용 건물과 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할 수 있다.

9)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제9조(복지사업의 시행) 도지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

5. 원거리 출·퇴근 공무원에 대한 출·퇴근차량 및 관사 지원

10)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으나, 임용·인사·예산권한은 시·도지사에 위임되어 있음.

□ 앞의 총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병역자원의 감소에 따라 군무원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주거지원 대상을 군인으로 한정하고 군무원을 제외함에 따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가용한 범위 내에서만 격오지 근무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주거를 지원하는 현행 제도는 군무원의 경제적 부담을 심화시켜 직무만족도 저하에 따른 우수인력 유출도 우려되는 실정임.

2021년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관으로 군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1,320명 대상)의 99.2%가 안정적인 복무여건을 위해서는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83.7%는 시급하게 군무원 주거지원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는 등¹¹⁾ 군무원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들에게 안정적인 주거여건을 제공하여 복무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군숙소의 노후화 및 부족 등 군인에 대한 주거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현실을 감안하면 개정안에 의해 군무원에 대한 주거지원이 확대될 경우 군인은 현재보다 더 부족한 주거지원을 받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군인의 주거지원 만족도가 저하되는 문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11) 【참고자료: 군무원 주거지원 관련 설문조사 결과】 참조.

[표 2] 관사 및 간부숙소 보유 및 소요 현황

(2024년 1월 초 기준, 단위: 호)

	전체	노후 (A)	부족 (B)	소계 (A+B)	개선 중	개선 필요
관사	73,908	3,530	10,256	13,786	3,753	10,033
간부숙소	107,733	18,392	6,296	24,688	17,212	7,476
합계	181,641	21,922	16,552	38,474	20,965	17,509

주. 관사 수량 73,908호는 민간주택임대지원 7,899건이 포함된 수치임.

※ 자료: 국방부

□ 개정안에 대해 국방부는 군무원의 정원 및 임무 확대에도 불구하고 제한적 주거지원으로 인해 우수인력 유출이 우려되며, 군인, 경찰·소방 등 他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되므로 군무원 주거지원 자체는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만, 현행 군인 주거지원 제도인 ①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 ② 민간 주택임대자금 지원 중, ②의 경우 현재 군인복지기금 재원부족으로 인해 기금 수입으로 일반회계전입금 편성과 자체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¹²⁾에서 군무원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① 관사·독신자숙소 지원만 적오지에 근무하는 군무원에게도 적용하자는 입장임.

기획재정부는 군무원의 경우 군인과 업무의 성격·근무조건이 상이¹³⁾

12) 국방부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군인 지원인원 감축(7,899 → 6,951명)에도 불구하고 2024년 예산을 이미 80% 이상 집행함에 따라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운용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군인복지기금 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편성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는 상황임.

13) “군인과 군원은 모두 국군을 구성하며 국토수호라는 목적을 위해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특정직공무원이기는 하지만 각각의 책임·직무·신분 및 근무조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하여 주거지원의 필요성이 낮으며, 군무원 보수체계는 일반공무원 제도를 적용하고 업무 난이도 역시 일반공무원과 유사하기 때문에 군무원에 대해서만 주거를 지원할 경우 일반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¹⁴⁾

(헌재 2005헌마1275) 참조.

14)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이유로 공무원연금공단과 협의를 통해 군무원에 대한 주택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3. 군무원 자녀에 대한 전·편입학 지원

개정안은 군인 뿐 아니라 군무원 자녀에 대해서도 근무지 이동 또는 근무형편에 따라 같이 생활할 수 없는 사유로 전학이나 편입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보육 및 교육 지원) ① 국가는 <u>군인</u> 의 근무지 이동 또는 근무형편상 같이 생활할 수 없는 사유로 그 자녀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전학이나 편입학이 필요한 경우에는 <u>군인</u> 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학이나 편입학을 지원한다.	제11조(보육 및 교육 지원) ① --- ---- <u>군인등</u> ----- ----- ----- ----- ----- <u>군인등</u> ----- ----- -----.

□ 현재 군인의 근무지 이동으로 자녀의 전학·편입학 등이 필요한 경우 군인의 소속 기관장이 교육청 등 관계 기관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해당 자녀의 전학 등을 지원하고 있음.

군무원의 경우에도 인사 전보에 따른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의 전학도 늘어나고 있어 전학이나 편입학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¹⁵⁾ 개정안은 군무원 자녀에 대한

전·편입학 지원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이를 두텁게 지원하려는 입법취지임.

- 개정안에 대하여 국방부와 교육부는 군무원의 근무지 이동 등 근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무원 자녀에 대해서도 전학이나 편입학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기획재정부는 현재 군인과 동일하게 지원 중으로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임.

15) 특히, 기술직의 경우 군단에 보직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 전보 시 군단 간 장거리 이동이 요구되므로, 전학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을 둘 필요성이 높음.

4. 군무원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설치

개정안은 군인 뿐 아니라 군무원을 포함한 밀집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보육 및 교육 지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u>군인</u> 밀집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보육 및 교육 지원) ② --- ----- ----- <u>군인등</u> ----- ----- ----- ----- -----.

□ 국방부는 과거 보육시설 건립예산의 제한으로 보육시설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2007년부터 군 관사 개선 BTL 사업과 연계하여 보육시설을 확보해 오고 있음.

이에 따라 대단지 군 관사지역이 아닌 경우에도 「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에 근거하여 100세대 이상 관사는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음.¹⁶⁾

16) 「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제7조(군 관사건립과 연계한 어린이집 설치 추진) ② 일정 규모(100세대 이상)의 군 관사 건립시 자녀양육에 필요한 어린이집을 확보하도록 한다.

□ 개정안은 군인 뿐만 아니라 군무원 자녀의 현황도 고려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시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무원 자녀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으로,

현재 군무원 자녀의 경우에도 「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에 군인 자녀와 차별 없이 함께 보육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을 법률로 규정할 입법적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¹⁷⁾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군무원 자녀에 대하여 군인 자녀와 동일하게 지원 중이므로, 개정안에 대하여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임.

17) 「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집"이라 함은 자녀의 보호자(현역, 군무원 및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발달특성에 따라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복지시설로서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되, 설립·운영주체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등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다만, '***유치원'은 교육기관에 속하므로 「영유아보육법」상의 어린이집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23조(입소 우선순위) ① 군 어린이집은 직장어린이집으로 군 자녀가 우선적으로 입소하여야 한다. 다만, 군 자녀의 입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영유아보육법」 제28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따른 입소우선순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 자녀의 입소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영유아
2.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3. 부부군인(군무원 포함) 자녀

5. 군무원 자녀에 대한 숙식시설 지원

개정안은 군인 뿐 아니라 군무원 자녀에 대해서도 근무형편상 군무원과 같이 생활할 수 없는 경우 숙식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③ 국방부장관은 <u>군인</u> 의 근무형편상 <u>군인</u> 과 같이 생활할 수 없는 <u>군인</u> 의 자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녀(국내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에게 숙식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취득하거나 인정받기 위하여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숙식시설을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 <u>군인등</u> ----- ----- <u>군인등</u> ----- ----- <u>군인등</u> ----- ----- ----- ----- ----- ----- ----- -----.

□ 현행법은 군인의 근무여건에 따라 자녀와 같이 생활할 수 없는 경우 군인 자녀에게는 숙식시설(기숙사)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군무원의 경우에도 군무원의 정원 증가로 인사 전보 시 이동 증가에 따라 군무원이 격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함께 생활하기 어려운 자녀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군무원의 근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같이 생활할 수 없는 군무원 자녀에게도 숙식시설(기숙사)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도 숙식시설에 공실이 발생하는 등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무원 자녀에게 숙식시설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을 법률로 규정할 입법적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군무원 자녀에 대하여 군인 자녀와 동일하게 지원 중이므로, 개정안에 대하여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임.

6.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시 군무원 자녀 고려

개정안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시설 운영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군인 뿐 아니라 군무원 자녀도 포함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군인</u> 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자에게 교육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의2(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등) ----- <u>군인등의</u> ----- ----- ----- ----- ----- ----- -----.

□ 개정안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시설 운영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군인뿐만 아니라 군무원 자녀도 포함함으로써 군무원 자녀도 원활한 교육여건 하에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으로, 국방부는 군무원의 인사 전보 증가에 따른 근무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군무원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개정안의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임.

- 현재 군인 자녀학교로서는 한민고등학교가 전군단위 모집이 가능한 일반사립고로 운영 중에 있음.

한민고등학교는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경기도교육청 관내에 있는 여타 사립학교와 동일하게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 등 예산을 지원받고 있고 있으나, 동법 제11조의 2에 따른 국방부로부터의 별도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¹⁸⁾

-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학교설립자에 대한 교육비 보조’에 관하여 군인의 경우 해당 지원 사례가 없는바, 해당 개정안 역시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임.

18) 국방부에 따르면, 재학생의 전체가 군인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법 제11조의2를 근거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함. 재학생 중 군인 자녀 비중은 약 70%이고, 나머지 약 30%는 경기도민의 자녀가 재학 중임.

7. 군인에 대한 고궁 등의 이용 지원

개정안은 군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11조의3(고궁 등의 이용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군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현역 군인의 경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가 일정 부분 제약되는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체계에서는 제대군인에 대해서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19)에 근거하여 고궁 및 공원 등의 무료·할인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제대군인과 동일하게 현역군인에게도 이러한 혜택을 부여하여 군인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으로

1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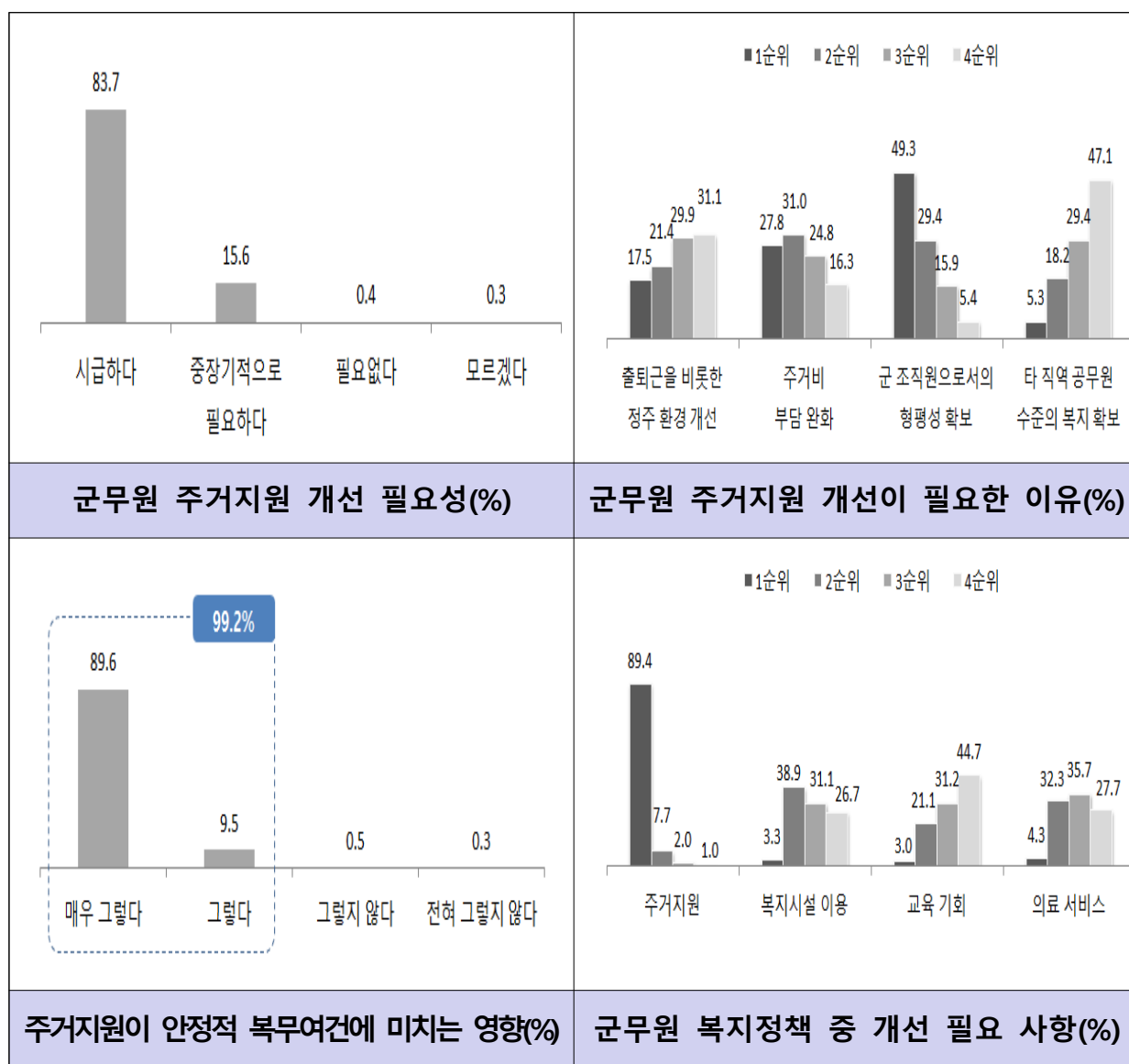
참고로, 현재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복궁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 뿐만 아니라 민간 문화시설인 영화관 및 식당, 놀이공원 등에서도 현역군인에게 관람료 또는 입장료를 무료로 하거나 할인해주는 경우를 다수 찾아볼 수 있는 상황임.

- 개정안에 대해 국방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복지를 장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이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도 현역 군인에 대해 이미 고궁 관람요금 감면 대상자로 정해 시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음.

이에 비해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는 현재 대부분의 국립박물관 및 공립박물관 등의 상설전 및 대부분의 국립·도립·군립공원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04

※ 참고자료: 군무원 주거지원 관련 설문조사 결과



*자료: KIDA, 「군무원 주거지원 개선 방안 연구」, 2021.